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운영,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총괄사항 (제1조 내지 제4조)
 -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대상범위
-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 협의회의 기능
 - 회의, 간사, 수당 및 여비
-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 친환경상품 구매예외
-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교육훈련
-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 자금 및 용자지원 확대
 -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 친환경상품 정보 제공
 - 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사업
- 보칙
 - 기관평가
 - 포상
 - 사무분장
 - 시행 규칙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관련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제11조제1항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미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설립한 공단

제 2 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시 공무원과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이 맡는다.

제9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 · 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 · 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 ③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 · 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은 수립 · 공표한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 · 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 · 유통 ·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천과 수범사례 등

-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 공표한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시 인증 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

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 · 소비촉진

제17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친환경상품 생산 · 유통 · 판매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 · 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 · 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내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관내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체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 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 장 보칙 등

- 제21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각 실·과·소 및 읍·면·동의 업무 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 우수한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는 「수도법」,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23조 관련)

1.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환경위생과】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집계 이행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환경위생과로 제출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환경위생과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포함) 계획수립 및 교육실적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관 련 법 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